

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농업기술센터의 과 및 담당 명칭을 과거 지도위주의 농업행정에서 기술개발 및 지원기능의 과 명칭으로 개정하고 '98년 1차 구조조정 시 본청 농축산과의 일부 업무기능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통합함으로써 농업행정조직을 일원화한 성과는 있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법적 권리와 의무가 많은 집행기능을 수행하면서 일부 문제점이 있어 업무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를 농업진흥과와 농업기술과로 각각 개정
-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로 조정되는 업무
 - 식량작물 증산업무
 - 농기계 및 위탁영농회사 관리업무
 -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추진
 - 농업발전기금 용자사업
 - 채소, 특작, 과수, 화훼 경쟁력 제고 사업
- 농업기술센터 신설(조정)사업
 - 식량작물 증산 기술지원업무
 - 농기계수리업무
 - 산업기능요원 육성 및 관리
 - 관광농업 개발업무
 - 채소, 특작, 과수, 화훼 경쟁력제고 사업 기술지원업무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제10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음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일부 업무가 농축산과로 조정되어 농업기술센터 및 농축산과의 정원 및 조직의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임.
- '98년에 1차 구조조정에 의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던 업무들이 다시 농축산과로 재이관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.
 - 농촌지도사의 고유업무인 지도·지원기능과 다른 집행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전문성 부족.
 - 시 본청과 농업기술센터의 청사가 원거리에 있어 업무처리 지연.
 - 경기도 및 상급 부서와의 업무협조 미흡.
 - 농업기술센터는 현행 법령상 재배정이 안되어 회계처리상 문제점이 발생.
- 동 개정조례안은 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으나 다음사항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.
 - 첫째, 동 개정조례안에 의할 경우 다시 농업행정조직이 이원화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,
 - 둘째, 읍·면·동 농업담당이 농업기술센터에 배치될 경우 활용방안 및 읍·면·동에 농업담당이 폐지됨에 따른 대비책.
 - 셋째, 읍·면·동 농업담당을 다시 농업상담소 등의 운영을 이유로 읍·면·동에 재배치될 경우 지휘감독권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비책.